

## 2025년도 『 지자체 연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』 삼성형 도입기업 모집 공고

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중앙회, 대·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,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대·중소상생형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3월 31일

중소기업중앙회장

◆ 본 공고는 대·중소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할 중소기업 중앙회/삼성이 중소·중견기업을 모집하는 공고입니다

### I. 사업목적

- 중소·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

### II. 사업 지원계획

#### □ 사업개요

-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별 규모와 수준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

#### □ 지원규모 : 총 105개사 내외

- 강원특별자치도\*\* 5, 경상남도\*\*\* 20, 경상북도(구미) 10, 경상북도(포항) 5, 광주광역시 20, 대구광역시 5, 부산광역시 15, 전라남도 10, 전북특별자치도 10, 충청북도 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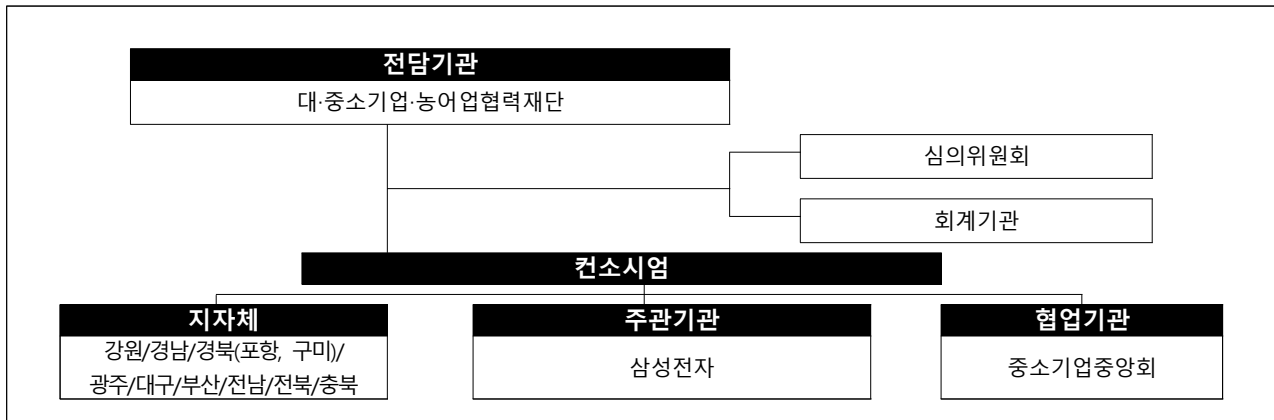
\* 단, 도입기업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\*\* 강원특별자치도 : 도비 15백만원, 기초지자체(시·군) 35백만원 지원사업으로 선정평가 후 기초지자체의 지급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최종 선정 됨

\*\*\* 경상남도의 경우 하기 지역에 한하여 지원 가능

: 고성군/김해시/사천시/양산시/의령군/진주시/창원시/하동군/함안군

## □ 추진체계



## □ 지원예산 : 총 70억원

## □ 지원수준 : 기초(기초 이상 신규 구축)

### ◦ 제조현장 혁신 [삼성전자 전문인력(멘토) 별도 지원]

- 기본 갖추기(제조혁신 마인드 제고, 5S3정, 품질/생산성 향상 등)
- 물류/자재관리, 지그/대차 제작 지원 등(사업비 내 비용 반영 가능)

### ◦ 운영시스템·자동화 구축(ICT 연계)

- 공장운영시스템(MES), 기업자원관리시스템(ERP), 공급사슬관리시스템(SCM), 제품개발지원시스템(PLM)
- 제조자동화 및 초정밀금형, 공정시뮬레이션 등

## 【세부 지원내용】

| 분 야      |                |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조현장 혁신  |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조혁신 교육, 5S(정리/정돈/청소/청결/습관화) 3정(정품/정량/정위치) 지도</li> <li>- 설비관리, 환경안전 분야, 품질/생산성 향상 지원</li> <li>- 현장개선 필요 기구물 제작</li> <li>- 공장 Layout 최적화, 제조물류, 창고관리 등 제조 노하우 전수</li> </ul> |
| 운영시스템 구축 | 공장운영시스템(MES)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조현장 운영시스템으로서 공정관리, 품질관리,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</li> <li>- 현장자동화는 KIOSK, 센서,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MES와 연결되어야 함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기업자원관리시스템(ERP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</li> <li>- 입고, 생산, 출하, 재고관리 등 제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분 야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자<br>동<br>화 | 공급사슬<br>관리시스템(SCM)   | - 수요예측, 생산계획, 공장운영 스케줄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<br>-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    |
|             | 제품개발지원<br>시스템(PLM)   | - CAD/CAE/CAPP/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PLM 시스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공장에너지관리<br>시스템(FEMS) | - 공장의 에너지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센서/계측장비/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에너지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|
|             | 제조자동화                | - 저비용·고효율 제조 로봇(무인운반차 등) 개발·보급<br>- IoT센서, 로봇 등을 접목하여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 향상<br>- ICT연계 조건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공정시뮬레이션              | - 공장·제품설계 등에 사전 검증을 통한 시행착오 예방<br>- 공장 및 공정 레이아웃 시뮬레이션 분석, 데이터 해석을 통한 품질 확보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초정밀금형                | - 금속 소재의 정밀설계, 가공, 조립을 위한 솔루션 제공<br>- 도장, 코팅, 연마 등 공정 개선을 통한 외관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지원<br>- ICT연계 조건        |

## □ 삼성전자 추가 지원프로그램

### ◦ 인력 양성 지원

- 삼성전자 상생협력아카데미 주관, 개발/품질/제조/판매 등 직무별 특화교육
-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, 스마트팩토리 유지/강화를 위한 전문가 육성  
· 삼성전자 교육 전담인력 파견 지원

### ◦ 신기술 접목 지원

- 삼성전자 개방특허 무상제공
- 우수기술 설명회 실시 (특허청 연계)

### ◦ 판로 개척 지원

- 삼성전자 네트워크 활용, 국내·외 바이어 발굴/매칭
- 제품 전시회, 구매상담회 등 개최
- 무역협회 TradeKorea, 미디어 연계 글로벌 홍보

□ 지원조건

【유형별 지원내용】

| 구 분  | 유형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| 기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원대상 |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<br>기초 수준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원규모 | 최대 6천만원, 7.2천만원(경남), 8천만원(광주/강원/전북)<br>(총 사업비 60%, 80%(광주/강원/전북) 지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원비율 | 지자체 : 삼성 : 도입기업<br>(전남/충북/부산/대구/구미/포항) 3 : 3 : 4 매칭<br>(광주광역시/강원/전북) 5 : 3 : 2 매칭<br>(경남) 3.5 : 2.5 : 4 매칭(총사업비 1.2억원한도) |

\* 지원금 한도 초과분은 도입기업 부담

\*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-1(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)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

\* 사업기간 : 기초 최대 6개월

단, 만기 1개월전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(H/W 문제시 6개월) 연장가능

\*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

□ 신청자격

◦ 도입기업 :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

-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
- '25년 삼성형 사업은 최대 2회 한해 신청 가능
- 사업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별로 가능

◦ 공급기업

- 운영시스템 : 자사가 개발한 운영시스템을 보유한 기업  
[외산 S/W를 자사인력으로 재개발(Customization)하여 공급하는 경우 인정]
- 제조자동화 : 자동화 구축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을 보유한 기업

## □ 신청기간 및 방법

### ◦ 참여의향서

- 신청기간 : 2025. 3. 31(월) ~ 2025. 4. 4(금)
- 신청방법 :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통해 제출
  - \*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biz.or.kr>) ⇒ 지원사업 ⇒ 스마트공장 ⇒ 공지사항 ⇒ 2025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(삼성전자) ⇒ URL(참여의향서) 클릭 ⇒ 참여의향서 제출
  - ※ 참여의향서 제출기업은 접수 및 변경사항 관련 상세 안내하며 참여의향서 제출없이 사업계획서 접수 가능

### ◦ 사업계획서

- 접수기간 : 2025. 4. 7(월) ~ 2025. 5. 7(수)
  - \* 현장실사 : 2025. 4. 14(월)부터 진행
  - ※ 배정 예산 상 지원가능 기업수의 일정 배수 이상 사업계획서 접수 시 조기 마감 등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### ◦ 신청방법 :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[smart-factory.kr](http://smart-factory.kr)) 온라인 접수

-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받아 작성
-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(기업) → 과제신청 메뉴 → 온라인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,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)
- \*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,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(공급기업 풀 공지 참조)

### ◦ 제출서류

| 구분 |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(온라인 제출)<br>*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대·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| 도입기업,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(유효기간 이내) 각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  | 도입기업(구축 공장)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(3개월 이내 발급)<br>※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 1부 |
| 4  | 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(유효기간 이내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  | 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(유효기간 이내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  |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/공급기업 대표자, 담당자 각 1부 (총 4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  | FP(기능점수) 산정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□ 지원절차



\* 정부 감리지침을 준용하여 감리법인이 최종 감리 실시

\*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선급금 지급 가능

## □ 선정절차 및 방법

- (현장실사) 사업계획서와 도입기업 현장의 연계성 평가
  -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2회 진행
    - \* 상황에 따라 1회만 진행 가능 \*\*1차 현장실사, 2차 수준 진단
  - 현장실사 중 보완 사항 발생 시 보완 확인을 위한 재평가 실시
- 선정평가위원회
  - 현장실사와 선정평가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 도입기업 선정
    - \* 필수요건 부적격시 1회 보완조치 기회부여 (후순위 배정)
- 원가계산
  - 선정된 기업 대상으로 사업비에 대한 원가계산 실시
- 협약
  - 중기중앙회-TP-도입기업-공급기업의 4자 협약 진행
    - \* 지방비 지원금 지급을 위해 협약 주체에 TP 참여

◦ 우대사항 : 각 항목별 3 ~ 5점 부여(중복시 최대 5점)

| 항목          |          | 세부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취약지역·계층     |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위기지역 소재기업</li> <li>· 정부/지자체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소재기업 (인구감소지역, 고용위기지역, 특별재난지역,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)</li> <li>- 사회적기업</li> <li>- 여성CEO 기업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해당부처, 지자체 발급 확인서 또는 선포/고시문(인구감소 지역 지정 고시 등)</li> <li>· 사회적기업 인증서</li> <li>· 여성기업 확인서</li> </ul> |
| 장애인기업       |          |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장애인기업확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뿌리기업        |          |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뿌리기업으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뿌리기업확인서</li> <li>※ 소기업 한정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일터혁신컨설팅     |          | 2025년 일터혁신컨설팅 지원사업 신청기업<br>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: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일터의 질을 높이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일터혁신 기반을 구축하여 기업의 경쟁력 및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사업<br>(문의 : 노사발전재단 02-6021-1167, 1176) | · '25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협약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FEMS 솔루션 도입 |          | 에너지관리공단 FEMS 또는 ESCO 솔루션 도입기업(과제수행 진행/완료 증빙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주관기관 선정 공문</li> <li>· 주관기관 완료 공문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글로벌 강소기업    |          |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글로벌 강소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<br>타      | 전라남도 특화  | 전라남도 소재 식품 관련 제조·가공 기업 (사업자등록증 '업종'에 업종코드표 확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광주광역시 특화 | 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 조례'에 따른 광주 Pre-명품 또는 명품강소기업 지정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관련 증빙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경상남도 특화  | 경남 추천상품(QC) 제조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관련 증빙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부산광역시 특화 | 2024년, 2025년 레전드 50+ 선정기업 (레전드 50+ 1.0, 2.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관련 증빙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◦ 지원제외대상

- 과제 신청일 기준 ‘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’을 수행 중인 기업.
  - \* 정부일반형, 대중소상생형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협약서 상 구축완료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(집중AS기간 수행중인 기업은 '25년 사업신청 가능)
  - \*\* 단, 최종감리 등에서 실패판정이 나오는 경우 고도화 과제 진행 중지
-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  - \* 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

### < 부적격 사항 >

- 휴·폐업중인 기업
  -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  -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
  -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
  -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
  -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- \*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선정이후에도 임의취소 가능하며, 사업 취소시에 사업비는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## □ 기타사항

- 본 사업 공급기업 선정의 책임은 도입기업에게 있음
- 사업완료는 정부 기준에 따른 수준확인이 선행되어야 함
- 삼성 및 지자체 지원금은 사업완료 후 공급기업에 지급함
- 총 사업비 중 상기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도입기업 부담임
- 정부정책에 따라 본사업의 지원조건은 변경될 수 있음
-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·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(최대 3년, 소기업은 최대 5년)를 사업비에 포함 가능
- 사업에 참여하는 도입기업은 사업종료 전 독립적인 스마트공장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함
  - \* 스마트팩토리아카데미(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)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
- 스마트공장 활용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구축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3년간 제출 필수. 단,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연 2회(6월·12월) 수기 등록 가능
  - \* 구체적인 방법은 중기부 가이드라인 통해 안내 예정

- 선정시 각 사업별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상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여 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. 단, 사업운영상 필요시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협의를 통해 별도 운영 가능

### III. 문의 및 연락처

문의처 :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(02-2124-4371~3, 4319, 4311, 4313 smart@kbiz.or.kr)

\* 빠르고 명확한 답변 위한 스마트한 상담창구 :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활용한 상담

